의안번호	제34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3. 16.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

의 안 번 호	제34호

제출연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현황】

○ 설 립 일 - 1998. 12. 28.
○ 일반현황 - 임원현황 : 이사 11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 5,527,386천원
○ 설립목적 - 인재육성을 위한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 면학시설 확충에 필요한 관내 초·중·고·대학교 지원사업

□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현황

○ 旣출연금(2022년 본예산) : 1,000,000천원(논산시 출연금)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

○ 금회출연금(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778,200천원
-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부터 논산시에서 역점 추진한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 중단됨
- 해당 학생들의 상실감을 보상하고 국제적인 자세를 배양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에『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를 출연하여 글로벌인재 특별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재원확보방안

○ 2022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 감액 : 10억2천2백1십2만5천원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산 출 근 거
평생교육과	
학교협력및지원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고등학교 학생 글로벌인재 해외연수지원 577,575,000원 ◎ 중학교 학생 글로벌인재 해외연수지원 444,550,000원

○ (재)논산시장학회 출연금 증액 : 7억8천8백2십만원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산 출 근 거
평생교육과	
학교협력및지원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출연금	
	01 출연금 ◎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논산시 출연) 1,788,,200,000원-기정1,000,000,000원=788,200,000원

○ 산출기초 : 2,252명(관내 중3, 고2 재학생, 학교밖청소년) × 350,000원

(단위: 명, 천원)

구 분	합 계		중학생 (3학년)		고등학생 (2학년)		학교 밖 청소년	기 타
	학교	학생수/사업비	학교	학생수/사업비	학교	학생수/사업비		
대상인원	27 개교	2,252	14 개교	985	13 개교	1,247	20	
사 업 비		788,200		344,750		436,450	7,000	

□ 최근 5년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540,000	540,000	1,314,200	1,333,100	**2,078,200**
출연금 (시비100%)	400,000	400,000	1,174,200	1,193,100	**1,788,200** 旣 동의 1,000,000 금회동의요구 **788,200**
출연금 (협력사업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290,000** 旣 동의 290,000

□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참고 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02-2100-3550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0.9.30.] [조례 제677호, 2010.9.30., 전부개정]

평생교육과, 041-746-5761

제7조(출연금)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6.28.] [법률 제15528호, 2018.3.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참고 2 논산시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추진현황

1.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추진(2016년 ~ 2019년)

○ **참여대상** : 관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전원

○ **연수지역** : 『중학교』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일원(2박 3일)
『고등학교』 중국 상해 일원(3박4일)

○ **예산지원** : 연수비용의 50% 보조

○ **주요성과**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9,285명	1,706명	2,333명	2,735명	2,511명
중 학 교	2,780명	-	555명	1,137명	1,088명
고등학교	6,505명	1,706명	1,778명	1,598명	1,423명

- 선별된 소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기존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인 청소년 모두가 차별 없이 참여하는 모델 정립
- 기획 단계부터 市, 교육청, 교사, 학생, 동문회,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2. 글로벌인재 특별장학사업 추진 (2020년 ~ 2021년)

○ **대 상 자** : 관내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학교밖 청소년

○ **사 업 비** : 788,200천원

○ **사업내용** :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사업비를 (재)논산시장학회로 출연하여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특별장학사업을 추진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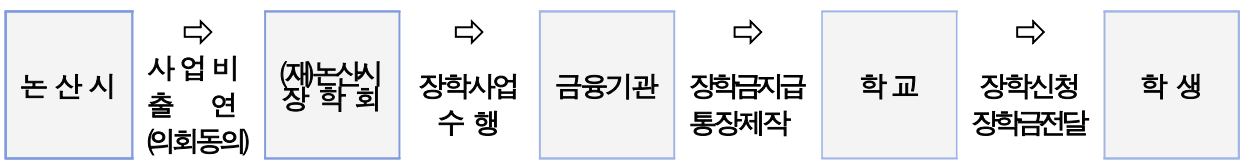

○ **장학금액** : 1인당 35만원(2019년 해외연수 비용 평균액)

○ **지급방법** : 개인별 미래드림통장

○ **주요성과**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록 해외연수 사업추진이 불가했지만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단위: 명/천원)

연도별	합 계		중학생 (3학년)		고등학생 (2학년)		학교밖 청소년
	학교	학생수/사업비	학교	학생수/사업비	학교	학생수/사업비	
총계	4,420명		1,537,550천원				
2020년	25개	2,186	12	843	13	1,327	16
	개교	765,100	개교	295,050	개교	464,450	5,600
2021년	27개	2,234	14	915	13	1,281	11
	개교	772,450	개교	320,250	개교	448,350	3,850